

ㄷ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확대되는 화물차주, 건설현장 화물차주, 어린이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·사후 보호조치 등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한편,

배달앱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의무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6. ~ 8. 18.)

3) 행정규제 :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제79조,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영 제67조제9호”를 “영 제67조제11호”로, “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”을 “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 제13의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부터 제53조까지,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, 제132조부터 제135조까지,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,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,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, 제322조, 제38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
제672조제7항(중전의 제8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

를 “제31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8조, 제42조, 제44조, 제86조, 제95조, 제96조,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, 제173조, 제177조, 제186조, 제233조,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, 제313조, 제316조, 제317조, 제319조, 제323조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9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3호, 제13의2호 및 제13의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2조, 제33조, 제38조,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, 제177조, 제178조,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, 제227조, 제279조, 제297조, 제298조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
제672조제8항(종전의 제9항)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제6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2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조치)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

“폭언등”이라 한다)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67조제1호, 제3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1조 각 호에 따른 예방조치
2.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 제6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”를 “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0호”로, “사람”을 “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배달종사자”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”를 “배달종사자가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3. 고객이 배달종사자에게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게시 또는 음성안내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72조(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①		제672조(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①		
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 태근로종사자(이하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라 한다) 중 영 제67조제1호·제3호·제7호,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-----		

		<u>제79조,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</u>		
1. <u>제79조,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</u>		<u><삭 제></u>		
2. <u>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(이하 이 조에서 “고객의 폭언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</u>		<u><삭 제></u>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③ -----		

		-----.		

1. · 2. (생 략)

3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
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
제공

4.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
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
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: 영 제
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
조치

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
제67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· 2. (생 략)

3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
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
제공

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
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
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 략)

4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
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
제공

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④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⑤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⑥ ----- 영

제67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

2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

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67조제11호-----

--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--.

<삭 제>

⑦ -----

--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8조, 제42조, 제44조, 제86조, 제95조, 제96조,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, 제173조, 제177조, 제186조, 제233조,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, 제313조, 제316조, 제317조, 제319조, 제323조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

1.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8조, 제42조, 제44조, 제86조, 제95조, 제96조,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, 제173조, 제177조, 제186조, 제233조,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, 제313조, 제316조, 제317조, 제319조, 제323조 및 제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

2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

<신 설>

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

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 제13의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는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부터 제53조까지,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, 제132조부터 제135조까지,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,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,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, 제322조, 제38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
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3호, 제13의2호 및 제

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32조, 제33조, 제38조,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, 제177조, 제178조,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, 제227조, 제279조, 제297조, 제298조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

2.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

⑩ (생 략)

<신 설>

13의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2조, 제33조, 제38조,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, 제177조, 제178조,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, 제227조, 제279조, 제297조, 제298조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⑩ (현행과 같음)

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

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“사업주”는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”로, “근로자”는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로 본다.

<신 설>

말한다.

⑫ ----- 제11항-----

-----.

제672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조치)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 “폭언등”이라 한다)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67조제1호, 제3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1조 각 호에 따른 예방조치

2.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건강장해가

제673조(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) ① 법 제78조에 따라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

2. (생략)

<신설>

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제1호,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치 중 필요한 조치

제673조(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) ① ----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0호-----

-----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배달종사자”라 한다)-----.

1. 배달종사자가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고객이 배달종사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문구를 이동통신단

② (생 략)	<u>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</u> <u>하여 게시 또는 음성 안내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